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디지털 기반 국경간 지급·이전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 등록 요건 신설 및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 정의 및 규율 (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

-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거래소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 안 제9조의3 신설)
-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 가상자산 이전 자료 집중기관 및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등록·변경, 폐지신고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및 변경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 별표2)

-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6개 유형의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 안 제15조의2 신설)
-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인적·물적 규정, 경영 조항 및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업무 수행 기준 마련
(☞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 해외지급결제업자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 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다.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안 제15조, 제35조, 별표3)

- 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 규정
(☞ 안 제15조 개정)
-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
(☞안 제35조 개정)
-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
(☞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라. 기타 개정 필요사항

(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 법률 개정예 따라 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
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금융회사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인 10년으로 설정
(☞ 안 제21조의1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상자산이전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2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 및 대행 등 그 밖의 영업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의3을 삭제하고,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해외지급결제업무의 유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해외지급결제업무”라 한다)는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급 및 수령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2조제1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직접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5. 전자결제대금 예치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제5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6. 전자고지결제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제5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제15조의3(중전의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의 유형,”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에 사용할 계좌(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액해외송금업무”를 각각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 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 이상을 갖출”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명”을 “2명(해외지급결제업무를 3개 이상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제15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및 제7항 중 “제2항제1호”를 각각 “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가. 제15조의2제1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10억원

나. 제15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해외지급결제업무: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본금.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9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

7. 제15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9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3(중전의 제15조의2)의 제목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6 전단 중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환전업무와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지급결제업자”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을 “해외지급결제업무를”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을 “해외지급결제업무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 방법 등의 정보기술 부문과 이용자 자금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 것

- ② 제15조의2제1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이행보증금의 산정)”을 “(이행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액해외송금업자가”를 “해외지급결제업자가”로,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를 “금액 및 이행보증금의 산정·예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해외지급결제업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 본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③ 해외지급결제업자에게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외지급결제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의 지급 범위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외지급결제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해외지급결제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지급결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해외지급결제업자가 해외지급결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해외지급결제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해외지급결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외지급결제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내용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는 것
2.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가상자산이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3제7항”을 “법 제11조의3제9항”으로,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5일”을 “14일”로 한다.

제2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속기한은”은 2036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마. 가상자산이전업자

제35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에 따른 검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검사 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거래·자본
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5조제12항 전단 중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을
“해외지급결제업무, 가상자산이전업무를”로,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
전문외국환업무를”를 “해외지급결제업무, 가상자산이전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사 업무에 대하여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검사 대상 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실시기간 등 기본방향이 포함
된 검사계획을 매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
사 결과 및 조치 현황 등을 매반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검사 결과와 관련된 세부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를 “(금융위원회 등에게의 통
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금”을 “하여금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해외지급결제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해외지급결제업무자 및 가상자산이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의2제1항”을 “제15조의3제1항”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1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을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지급결제업자의”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지급결제업자”로 한다.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받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독 업무의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과 가상자산이

전업자는 외국환거래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변경·폐지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1) 법 제8조제2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2) 법 제8조제3항 위반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별표 2 제2호마목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20”을 “4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0”을 “6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0”을 “80”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70”을 “100”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위반행위란 1) 중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7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 제15조의3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업무에 상응하는 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7년 6월 30일까지 제15조,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자는 제15조,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u>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u> 2.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9조(자본거래) ① ----- ----- ----- -----. <u><삭제></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가상자산이전업무) ① <u>법 제3조제1항제2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 및 대행 등 그 밖의 영업행위를 말한다.</u> <u>② 법 제3조제1항제2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u>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생략)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현행)

략)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할 것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해외지급결제업무의
유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
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해외
지급결제업무”라 한다)는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무: 재정경제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급 및 수령 범위에서 이루
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
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2조 제1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직접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u>매도</u> 5. 전자결제대금 예치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 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 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6. 전자고지결제에 관한 외국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제2항제5호 및 「전자금 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제2호에 따른 업무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 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직접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 입 또는 매도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 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 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15조의3(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 ① ----- ----- <u>해외지급결제업무</u> ----- ----- ----- ----- -----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
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
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
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
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
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
한 사항

7. 삭 제

8. · 9. (생략)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
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
상일 것

---.

1. · 2. (현행과 같음)

3. 해외지급결제업무의 유형, ---

4. 해외지급결제업무-----

5. 해외지급결제업무에 사용할
계좌(해외지급결제업무-----

6. 해외지급결제업무 -----

8. · 9. (현행과 같음)

② 해외지급결제업무-----

-----.

1.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자기자본 이상을 갖출 ---

<신 설>

<신 설>

2.·3. (생 략)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제15조의2제1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10억원

나. 제15조의2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 해외지급결제업

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본금. 다만, 같은 법 제2

조제19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

자본

2.·3. (현행과 같음)

4. 해외지급결제업무 -----

5. -----

----- 2명(해외지

급결제업무를 3개 이상 겸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명) -

--

6.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
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
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
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
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
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
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
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
지의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
나 등록을 하였을 것. 다만, 같
은 법 제2조제19호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5조의2제1호-----

---- 제2항제1호가목-----

-----.

⑦ -----

----- 제2항제1호가목---

--.

<삭제>

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
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
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
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
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
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
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
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수령
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

<삭 제>

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재
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
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
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
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
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건전한 외
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
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삭 제>

(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

록한 자”로 본다.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
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
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
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
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
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
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
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
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
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② ~ ⑦ (생략)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와 해외지급결제업무-

해외지급
결제업무 -----

-----.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해외지급결제업무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지급결제업
자”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삭 제>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① -----

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1. (생략)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
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
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
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
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 (생략)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
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해
당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
로 구분하여 관리

3.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해외지급결
제업무-----

-----.

가. (현행과 같음)

나. 해외지급결제업무를 ---

- 해외지급결제업무별---

3. (현행과 같음)

4.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의 안전성과 신뢰

4. (생략)

<신설>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
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
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
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
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단서 신설>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
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
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
방법 등의 정보기술 부문과
이용자 자금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을 따를 것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5조의2제1호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
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이행보증금) ① -----
----- 해외지급
결제업자가 -----

----- 금액 및 이행보증금의
산정·예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외지급결제업자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자
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 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는 해외지급결제업자로서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
탁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지급결제업자

③ 해외지급결제업자에게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외지급결제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의 지급 범위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
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
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지급결제업자의 파산, 업
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해외지급결제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
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
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④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지급결제
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해외지급결제업자가 해외지
급결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해외지급결제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
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해외지급
결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
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

4.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외지급결제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삭 제>

<삭 제>

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재
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
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
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
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
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
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
우

<삭 제>

4.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신 설>

제17조의5(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내용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2.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신 설>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9. (생략)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가상자산이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성 규제) -----

-----.

1. ~ 9. (현행과 같음)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
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
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
을 정할 것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
 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
 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
 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
 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
 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

<삭 제>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

 ----- 법 제11조의3제9항-----

 ----- 30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14일 -----

 -----.

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
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35조(검사 등) ① ~ ③ (생략)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
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
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
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
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2(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속기
한은”은 2036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5조(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다.

가. (생략)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
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
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
자 및 관계인

라. (생략)

<신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단서 신
설>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⑤ ~ ⑪ (생략)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
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
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

--.

가. (현행과 같음)

나. 해외지급결제업무-----

<삭제>

라. (현행과 같음)

마. 가상자산이전업자

3. -----
----- 다만, 다목
에 따른 검사의 경우 금융감독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검
사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
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
----- 해외지급결제업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

-- 해외지급결제업무, 가상자산

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
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⑬ ~ ⑰ (생략)

<신설>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생략)

이전업무의 -----

-----.

-----.

⑬ ~ ⑰ (현행과 같음)

⑱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법 제20조제6항
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
사 업무에 대하여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검사 대상 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실시기
간 등 기본방향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매년 3월까지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등을
매반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
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검사 결
과와 관련된 세부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금융위원회 등에게의 통

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생략)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
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
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
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
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5. ~ 8.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
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탁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2. (현행과 같음)

3. -----
----- 해외지급결제
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자---

4. -----
----- 해외지급결제업
무자 및 가상자산이전업자---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삭제>

<삭제>

3. (생략)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
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삭제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⑤ ~ ⑦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3제1항-----
----- 해외
지급결제업자-----

5. 제1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지급결제업자-----

<삭제>

7.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
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지급결
제업자의 --- 해외지급결제
업자-----

9.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지급결제업자-----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
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법 제2
3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재위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①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탁을 포함한다) 받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독 업무의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① -----

-----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

-----.

1.·2. (현행과 같음)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과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외국환거래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
전-----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 ----- ----- -----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3.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변경·폐지 신고에 관한 사무</u>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753